

약관 신구조문 대비표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약관			
제10조 (계약해지)	1-4. "갑"과 "을"이 각각의 경영 정책상의 사유, 관련 법령의 제/개정, 금융감독원의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나, 금융환경의 급변으로 본 계약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	1-4. "갑"과 "을"이 각각의 경영 정책상의 사유, 관련 법령의 제/개정, 금융감독원의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	공정위의 ‘은행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·해지 조항’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에 따른 변경
금융결제원 CMS 이용약관서			
제7조 (계약의 해지)	① “을”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“갑”은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융결제원에 CMS 이용승인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. 1. “을”이 서비스이용 해지를 요청한 경우 2. “을”이 CMS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3. 제5조 제3항에 의해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4. 기타 “CMS”를 계속 이용하기가 어렵다	① “을”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“갑”은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융결제원에 CMS 이용승인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. 1. “을”이 서비스이용 해지를 요청한 경우 2. “을”이 CMS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3. 제5조 제3항에 의해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	공정위의 ‘은행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·해지 조항’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에 따른 변경

	고 “갑” 이 판단한 경우		
가상네트워크집금을 통한 통합대출채권관리솔루션 이용약관			
제13조 서비스의 해지	<p>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서면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1. 고객이나 은행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</p> <p>2. 고객이 서비스 수수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</p> <p>3. “고객” 과 “은행” 은 각각의 경영 정책상의 사유, 관련 법령의 제. 개정, 금융감독관의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나, 금융환경의 급변으로 본 계약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</p>	<p>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서면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1. 고객이나 은행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</p> <p>2. 고객이 서비스 수수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</p> <p>3. “고객” 과 “은행” 은 각각의 경영 정책상의 사유, 관련 법령의 제. 개정, 금융감독관의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</p>	<p>공정위의 ‘은행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·해지 조항’ 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에 따른 변경</p>